## 가요

- 정보통신공사를 도급·시공하거나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정보통신 공사업을 등록 하여야함
- 면허없이 사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제 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
- 관할 시·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 인에 게 교부함

### 처리절차



※처리기한: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
## ▶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

- 등록기준: 자본금, 기술능력, 사무실
  - 자본금(실질자본금)
  - 등록기준과 증빙서류표

구분	LII용
등록기준	▶ 법인업체 : 1억5천만원 (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함) ▶ 개인업체 : 2억원
증빙서류	▶ 기업진단보고서("공인회계사"또는 "경영지도사"가 발급함) (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'경영지도사등록증' 사본 첨부) ★기업진단기준일  「등록신청의 경우: 신청일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: 자본금 변동일(법인은 변경등기일)  양도 및 합병의 경우: 양도계약일 및 합병계약일

# ○ 기술능력

• 등록기준과 증빙서류, 참고사항 표

구분	ЦB
등록기준	▶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- 최소한의 요건 : 기능계 1명 이상(기술계로 대체 가능), 중급 1명 이상
증빙서류	▶ 정보통신기술자현황(관할 시·도 양식 활용) ▶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
참고사항	▶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함
	<ul> <li>▶ 국가기술자격자(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)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공사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 아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하여야함</li> </ul>

# ○ 사무실

• 등록기준과 증빙서류 표

구분	Цв
등록기준	▶ 15제곱미터(4.6평)이상
증빙서류	<ul> <li>사무실 면적이 표기된 평면도 및 약도(임의작성)</li> <li>다음 중선택         <ul> <li>자기건물인 경우: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</li> <li>전세권이 설정된 경우: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건물등기부등본 1부</li> <li>임대차인 경우: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건물등기부등본 또는건축물대장등본 1부</li> </ul> </li> </ul>

# 벌칙 (법 제 66조, 법 제 74조)

-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: 등록취소
-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
#### ▶ 기타사항

-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하며,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 사업등록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함
-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"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 단요강"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하며, 진단기준 일은 다음과 같음.
  - ▶ 기업진단기준일
    - 등록신청의 경우 :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
    - 자본금 변동의 경우: 자본금 변동일(법인은 변경등기일)
    - 양도합병의 경우: 양도계약일 및합병계약일

## 🛂 관련법률

- [정보통신공사업법]
- [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]